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성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98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.

발 의 자 : 이성권 · 김용태 · 안철수
고동진 · 최보윤 · 조승환
이진숙 · 김종양 · 이현승
조은희 · 김도읍 · 유영하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규정하고,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설치될 수 있는 횡단보도 신호기, 속도제한 안전표지, 과속 방지시설, 미끄럼 방지시설, 방호울타리 등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나열하여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,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설의 노후화나 성능 저하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해 점검 · 성능검사 · 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해당 시설 ·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

성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6항 신설).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시·도경찰청장,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설치된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,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 및 성능 검사를 실시하고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· 해제 및 관리) ① ~ 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· 해제 및 관리) ① ~ ⑤ (현 행과 같음) <u>⑥ 시·도경찰청장, 경찰서장</u> <u>또는 시장등은 제4항 및 제5항</u> <u>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</u> <u>로에 설치된 시설 또는 장비에</u> <u>대하여 교육부, 행정안전부 및</u> <u>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</u> <u>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</u> <u>검 및 성능 검사를 실시하고</u> <u>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</u>